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개정에 따른 MSDS 정보제공 안내

1. 유해성미확인물질의 MSDS 작성 방법 관련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화평법)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이 신설되고, 이에 대한 정보제공, 취급사업주 조치사항 의무 등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MSDS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하위사용자에게 양도·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❖ 법률 개정 내용

- 화평법 상 유해성미확인물질 신설
 -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양도·제공하는 경우 관련 정보제공 의무
 - 유해성미확인물질 취급사업주의 관리 책무

❖ 적용 대상

- 개정법 시행일 2025년 8월 7일 이후, 화평법 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MSDS

❖ MSDS 작성 유의사항

- 유해성미확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MSDS를 작성하는 경우, MSDS 15호 항목 (법적 규제현황)에 유해성미확인물질, 유해성미확인항목, 취급시 유의사항을 기재
 -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이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
 -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따라 해당물질의 유해성이 미확인된 항목을 포함하여 기재[화평법 제30조에 따라 필요한 정보(화학물질의 특성 등)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]
 - 취급 시 유의사항으로 “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사용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동법 제5조에 따른 안전한 취급 필요” 문구 기재
- MSDS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성성분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별도 정보제공하여야 함
- 개정 양식이 아닌 기존 양식(개정 MSDS 양식 유예기간, ~'26.6.30)에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경우, 해당 내용을 기존 양식 15호 마목(기타)에 법률명을 적시하여 기재

❖ (개정 양식) 유해성미확인물질 포함 제품의 MSDS 15호 항목 작성 예시①

15. 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: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:

다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:

(작성예시)

○ 유해성미확인물질(해당물질명)

* 혼합물인 경우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의 물질명 또는 대체명칭을 괄호에 추가 기재 필요(대체명칭 기재시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명칭의 명명법에 따라 기재 권고)

- 미확인 항목: (작성 예시) 급성경구독성

* ①급성경구독성(또는 급성흡입독성), ②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, ③어류급성독성,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성장저해, ④이분해성 등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중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

- 취급 시 유의사항: (작성 예시)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사용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동법 제5조에 따른 안전한 취급 필요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: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: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:

❖ (기존 양식) 유해성미확인물질 포함 제품의 MSDS 15호 항목 작성 예시②

15. 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: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: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: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: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:

(작성예시)

○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: 유해성미확인물질(해당물질명)

* 혼합물인 경우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의 물질명 또는 대체명칭을 괄호에 추가 기재 필요(대체명칭 기재시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명칭의 명명법에 따라 기재 권고)

- 미확인 항목: (작성 예시) 급성경구독성

* ①급성경구독성(또는 급성흡입독성), ②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, ③어류급성독성,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성장저해, ④이분해성 등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중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

- 취급 시 유의사항: (작성 예시)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사용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동법 제5조에 따른 안전한 취급 필요

2. 규제 물질 분류 변경에 따른 MSDS 개정 관련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개정으로 유독물질의 분류가 세분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MSDS를 개정하여 하위사용자에게 양도·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❖ 법률 개정 내용

-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상 유독물질의 세분화
 - 유독물질 → 인체등유해성물질(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)
- * 물질별 구분 내용은 환경부 ‘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’(舊 ‘유독물질의 지정고시’)에서 규정

❖ 적용 일정

- 시행일 : 2025년 8월 7일
- 정보제공 유예기간 : 2026년 7월 1일까지 변경된 규제정보 제공
 - * 환경부 ‘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’(舊 유독물질의 지정고시)에 경과조치 규정

❖ MSDS 작성 유의사항

- 개정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제조·수입하는 제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MSDS 15호 항목(법적규제 현황)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반영
- 기존 MSDS는 유예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나, 정보제공 유예기간까지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MSDS를 작성·제공하여야 하며, 유예기간 중이라도 MSDS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MSDS를 개정하여 하위사용자에 제공 필요
 - * 15호 항목(법적규제현황) 개정은 MSDS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MSDS시스템상 재제출 의무는 없음
-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는, 환경부 ‘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’(舊 ‘유독물질의 지정고시’)를 확인